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제도

대외홍보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2009년에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무상보육 도입에 따른 가정양육 가구에 대한 대체적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까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선별지원에서 2013년 보편지원으로 변동되었다. 하지만 영유아 수 감소, 지원 대상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수급 대상과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연령은 꾸준히 확대되어 2022년 만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은 2023년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로 통합된다.

본고에서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존의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2022년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모급여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다. 부모급여는 2024년도에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에 50만원을 지원 (단, '23년에는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하여 영아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¹⁾

정부는 저출산 시대 대응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존의 현금지원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비용이 지원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3년 부모급여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이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아동양육 가정에 지급되는 대표적인 비용 지원 제도는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으로, 본고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아동 대상 현금지원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8.19.).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2. 현금 지원 제도

가. 첫만남이용권 및 영아수당²⁾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기획되었는데, 아동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아동의 출생부터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³⁾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되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 0세아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 첫 지급 실시되었다.⁵⁾

영아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등화된 지원을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하고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최대 24개월 미만 영아이며,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영아수당으로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2022년 3월 25일 기준 5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하였고, 45,405명이 지급받았다.⁶⁾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에 보면, 영아수당 지원 대상을 151천명으로 산정하고, 총 예산을 545,234백만으로 책정하고 있다.⁷⁾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⁸⁾, ‘23년부터는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로 지원액을 확대하여 내년부터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게 월 최대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⁹⁾

나. 아동수당¹⁰⁾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 서비스이다¹¹⁾. 아동수당은 2018년 3월 아동수당법을 제정하여 2019년 9월부터 지급되었으며, 만 6세 이하 수급아동 가구 소득인정액 하위 90%에 매달 10만원을 지급하였다.¹²⁾ 처음 도입할 때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선별지급이었으나, 2018년 12월 국회를 통

2) 복지포털 복지서비스 내용 참조(<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022년 12월 20일).

3) 대한민국정부(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p. 76.

4) 보건복지부(2021). 2022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pp. 3-4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4.1.일자).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개시, p. 1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3.31.일자).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인출일:2022년 12월 21일).

7)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p. 283.

8) 메디컬투데이(2021.12.3.일자). 영아수당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 확대(인출일: 2022년 12월 22일).

9) 베이비뉴스(2022. 830일자). 부모급여 월 70만원 내년부터 매달 지급... 영아수당은 폐지(인출일: 2022년 12월 22일).

10)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수당 사업 안내, pp. 3.

11)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수당 사업 안내, p. 3.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4.16.일자).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표 1〉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예산 현황

단위: 만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238	247만	263.5	247.2	273.2
	0-5세	0-5세/0-6세(9월~)	0-6세	0-6세	0-7세
총예산	7,096억 원	2조 1,627억 원	2조 2,834억 원	2조 2,195억 원	2조 4,039억 원
전년 대비 증감	-	204.8%	5.6%	-2.8%	8.3%
국고보조율	73.5%	72.89%	72.89%	75.1%	-

자료: 보건복지부(2018a-2022a).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개요. 각년도
출처: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6 〈표 II-1-2〉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예산 현황(2018-2022).재인용.

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상관없이 보편지급으로 확대되었다.¹³⁾

2022년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7세 아동(0-95개월)으로 비용은 월 10만원이다. 이는 2021년 12월 2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¹⁴⁾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소득재산 90% 이하 0-5세 아동 238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꾸준히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2022년 0-7세

아동 273.2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대상자 확대로 전체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7,096억 원에서 2022년 2조4,039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 가정양육수당¹⁵⁾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표 2〉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2년생 이전까지 자녀)	200천원	0~11	200천원		
12~23 (22년생 이전까지 자녀)	150천원	12~23	177천원	0~35	200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100천원	36~47	129천원		
36 이상 ~ 86 미만	100천원	48 이상~ 86 미만	100천원	36 이상 ~ 86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출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인출일: 2022년 12월 21일 인출).

1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1.14.일자). 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

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4.22.일자).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15) 보건복지부 정책 내용 참조(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2&PAGE=2&opTitle=, 2022년 12월 20일)

〈표 3〉 가정양육수당 수급 현황 및 예산

단위: 천 명, 억 원

구분	2009년 (신규)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0	114	1,193	933	745	642	595	427 ^{주)}
지원대상	0-1세		0-5세					
	차상위계층 이하			전 소득계층				
총예산	324	657	8,810	12,192	10,891	8,428	7,608	5,082

주: 1) '22년 출생아는 만 0-12세 영아수당 지원 대상으로 본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수 산출에서 제외함.

2) 지원대상 수는 양육수당,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수를 합한 수치임.

3) 2016, 2018, 2020년 수치는 보육통계를 기준으로 함.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2019a),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개요.

2)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3) 보건복지부(2016, 2018b, 2020b), 보육통계(각년도).

4) 보건복지부(2013, 2021a, 2022a),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출처: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9, 〈표 II-1-4〉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예산 현황(2009, 2010, 2013, 2016, 2018, 2020, 2022) 재인용.

영유아에게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은 연령별로 지급금액이 차등화되어 있는데, 만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만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다.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의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차등지급되어,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10만원-20만원, 장애아동은 35개월까지는 20만원, 36개월에서 86개월 미만 10만원으로 지급된다. 단, 영아수당 신설로 인해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지만, 가정양육수당 지급 연령 기준은 2022년 기준과 동일하다.

가정양육수당은 2012년까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선별지원을 했으나, 2013년부터 0-5세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되어 보편지급으로 변동되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와 주요 가정양육수당 수급 연령층 중 만 1세 이상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로 2013년 이후 지원대상과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⁶⁾

3. 마무리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현금지원 제도는 가정양육수당이 2009년 가장 먼저 도입되고 아동수당이 2018년에 도입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아동수당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양육 가구에 대한 대체적 성격으로 가정양육수당 도입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아동수당은 지속적으로 지원 아동 범위를 확대되었으나, 비용은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은 2023년 부모급여 형태로 통합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영아 가구에 대한 보편지원의 확대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와 아동양육 부담 완화에 좀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16) 박은정·이정원·윤지연·김난주(2022),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제도 구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9.